

2021년도 제6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4. 5.(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박재화, 백대용(분과위원장), 오영주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60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한국저작권보호원 강나래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 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045건(안건번호 제2021-32144호~33250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1-32144호는 공정이용 등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게시자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32145호~32162호는 해당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32163호는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33248호~33250호는 긴급대응저작물에 대한 신속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최신 영화의 불법복제물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들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가결함.
-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2,015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6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1-60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강나래 전문위원: 회의록 5쪽의 민원인이 신고한 저작물명, 6쪽의 밴드명 공개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C 위원: 제2호, 제3호 안건은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여야 할 것임.
- B 위원: 회의록에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저작물명, 밴드명은 비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임.
- A 위원: 이견 없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음.

3. 안건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강나래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하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강나래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25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2,045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건번호는 제 2021-32144호~33250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32144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게임 커뮤니티 이용자가 자신의 게임 플레이 영상을 게시하면서 배경음악으로 외국영화 OST 음악저작물을 이용한 사안임. 해당 음악저작물은 현재 유료 다운로드 방식으로 합법적 이용이 가능함.
 해당 영상은 총 3분 41초로, 1분 30초 분량의 위 음악저작물을 반복 재생하여 이용하고 있음. 또한 심의대상 게시물은 게임에 대한 내용만 게재하고 있어 음악저작물의 제목 등 관련 키워드의 검색을 통하여서는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함.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

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1-32144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직접 확인함)
- A 위원: 해당 안전은 게시자가 자신의 게임 플레이 영상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음악저작물을 이용한 사안임. 공중이 음악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안과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됨.

지난 전체위원회에서는 음악저작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면서 감상 등을 함께 게재한 블로그 게시물에 대하여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한 바 있음. 사안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임.

- C 위원: 지난 전체위원회 안전의 경우 음악저작물에 대한 감상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으나, 해당 안전의 경우 음악저작물은 영상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사용되었을 뿐, 게시물 자체는 게임 플레이에 대한 내용만을 담고 있음. 사실관계가 다소 다른 것으로 보임.

최근 SNS 회사들은 게시물 작성 시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배경음악으로 이용하는 경우 자동 필터링 기능에 의하여 음소거 내지 삭제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음. 이러한 경향을 고려하면, 단순히 배경음악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음악저작물의 무단이용을 용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A 위원: 해당 게시자는 해당 커뮤니티에서 게시물을 다수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게시물을 올릴 때에도 해당 안전과 같은 방식

으로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는지?

- 강나래 전문위원: (해당 게시자가 커뮤니티에 게시한 글 목록을 제시 하면서)같은 방식으로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영화 영상저작물 일부를 사용하여 게시물을 올리는 것으로 확인됨.
- B 위원: 해당 음악저작물의 전체분량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하여야 할 부분으로 판단됨.
반복적인 저작권법 침해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경고의 시정권고를 통하여 게시자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됨.
- A 위원: 저작권 침해 개연성이 높으나 이용의 주된 목적, 시장 대체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한 사안으로 판단됨.
- C 위원: 동의함. 공정이용 등 저작권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게시자에게 경고의 시정권고는 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32144호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32145호~32159호는 민원인이 블로그에 게시된 불법복제물을 신고한 사안임.
안전번호 제2021-32160호~32162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

♡♡♡♡♡', 출판물 '♡♡ ♡♡ ♡♡♡'를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1-32145호~32162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직접 확인함)
- B 위원: 데드카피 건으로 확인됨. 모두 가결 의견임.
- A 위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가결함이 타당함.
- C 위원: 동의함. 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제공한 건으로,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32145호~32162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32163호는 보호원이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 이용자가 음악저작물에 대한 감상을 내용으로 하는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스트리밍 형식으로 음악저작물을 제공한 사안임.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우리 심의위원회는 제2021-63회 전체위

원회(2021. 4. 1. 개최)에서 음악저작물에 대한 무단이용은 저작권침해로 판단함이 타당하나, 불법복제물 복제 및 전송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여 음악저작물을 게시한 사안과는 다르게 보아야 한다는 점,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저작권법 준수 안내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경고의 시정권고하기로 가결한 바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1-32163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직접 확인함)
- B 위원: 직전 전체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안전과 동일한 사안임. 음악저작물을 감상평과 함께 게재하고 있음. 전체위원회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C 위원: 해당 저작물을 삭제 또는 전송중단할 경우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고 가결함.
- A 위원: 저작권 침해 개연성이 높으나, 표현의 자유 등을 고려하여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자는 의견에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32163호는 복제·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1-32164호~33250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안전번호 제2021-32164호~33250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32164호~33250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32144호 및 제2021-32163호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고, 안전번호 제2021-32145호~32162호 및 제2021-32164호~33250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이 제6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6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4. 12.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박재화

위원 오영주